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부산가톨릭대학교 학칙」(이하 "학칙"이라 한다.) 제93조에 따른 부산 가톨릭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.)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(이하 "대학원"이라 한다.)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등과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교외 기관(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.)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을 따른다.
- 제3조(지급대상) 본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외장학금의 경우 장학 성격에 따라 수료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.
 - 1. 직전학기 성적이 3.0/4.5 이상인 자
 - 2. 학과장 또는 소속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 - 3. 전일제 대학원생 중 강의, 실험, 실습에 참여하거나, 내부 및 외부연구에 참여하는 자
 - 4.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자
 - 5. 본 대학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는 교직원 본인(정규직에 한함), 배우자 및 직계자녀
 - 6. 본 대학교 학위 취득 후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하는 자
 - 7. 경제적사정이 어려운 자
 - 8. 외국인유학생
 - 9. 외국인유학생 중 한국어성적이 우수한 자
 - 10. 가톨릭 성직자 또는 수도자
 - 11. 석사논문 대체학기 이수를 승인받은 자
 - 12. 주저자로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
 - 13. 본 대학교와 학·연·산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 중인 자
 - 14. 온라인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자
 - 15. 석·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으로 입학한 자
 - 16.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
 - 17. 그 밖에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제4조(사무관장) 장학업무의 사무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기획처장은 장학기금 조성과 예산 배정을 담당한다.
 - 2. 사무처장은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.
 - 3. 대학원장은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2 장 위 원 회

- **제5조(대학원위원회)** ① 대학원위원회에서는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다.
- 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, 지급기간 및 기준액 등
 - 2. 장학금 지급과 그 중지 및 취소처분의 결정
 - 3. 장학금에 관계되는 기타 중요한 사항

제 3 장 장 학 금

- 제7조(장학금 종류 등)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 - ②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액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.
 - ③ 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, 장학재단, 사회단체, 기업, 개인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신청, 제출서류, 선발방법, 지급인원, 지급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교외 기관(개인 포함)의 규정, 지침 등에 따른다.
- 제8조(유효기간) 장학금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, 해당 학기에 한한다.

제 4 장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

- 제9조(장학금 신청 및 추천)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학금 의 종류에 따라 소속학과를 경유하여 대학원 교학부로 제출한다. 다만, 장학금 종류별로 별도 신청 및 추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며, 장학금 지급을 요청하는 교내외 공문서 등으로 신청사실이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 신청서를 생략할수 있다.
- 제10조(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
 - 1.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2.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
 - 3. 기타 위원회에서 신청자격을 제한한 자
- **제11조(장학금 지급의 중지 및 취소)** 선정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의 지급을 취소한다.
 - 1. 등록을 필하지 않고 휴학한 자
 - 2. 직전학기에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
 - 3. 자퇴자 및 제적자
 - 4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- 제12조(장학생 심사 및 선발) 심사 및 선발은 각 장학금 종류별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 대학원에서 선발하여 집행한다. 다만, 대학원장이 특별히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.

- 제13조(장학금액 및 지급) ① 장학금 지급은 매학기 등록금 납부 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등록금을 기 납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감면 및 면제 장학금을 제외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정부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며 차액분이 발생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한다.
- 제14조(이중지급 금지) ①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, 중복 수혜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수혜 대상자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적용한다.
 - ② 중복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본교출신장학금
 - 2. 외국인면학장학금
 - 3. 한국어능력우수장학금
 - 4. 연구장려장학금
 - 5. 학 연 산협약기관장학금
 - 6. 온라인석사과정입학장학금
 - 7. 통합과정진입학장학금
 - 8. 특별장학금
 - 9. 외부재원(정부사업, 각종 기타사업) 장학금
- 제15조(장학생의 교체)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.
 - 1. 중복수혜대상으로 해당 장학금을 반환하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
 - 2.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휴학한 경우
- **제16조(장학생의 자격상실)**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제17조(수혜기간) 장학금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, 학비감면장학 수혜는 이수학 기를 기준으로 4학기(특수대학원은 5학기)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각 장학금 종류별 별도의 수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제18조(장학금의 반환)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미등록하거나 휴학, 자퇴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준용)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별표의 외국인면학장학금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이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교내장학금의 종류·지급기준 및 지급금액

장학금 종류	대상	지급기준	지급금액	수혜기간	비고	
우수장학금	모든과정	직전 학기 성적이 3.0/4.5이상인 자	수업료의 30%	정규학기 내		
교육지원 장학금	모든과정	강의, 실험, 실습에 참여하는 전일제 대학원 생	수업료의 50%	정규학기 내	■ 예산에 따라 지원 인원 선발함 ■ 외부연구과제 수행 지도교수의 대학원 생 우선 지원함	
연구지원 장학금	모든과정	내부 및 외부연구에 참여하는 전일제 대학원 생	수업료의 50%	정규학기 내		
교직원 장학금A	모든과정	본 대학교(산학협력단 포함)에 재직하는 교직원 본인(계약직에 한함)	입학금 전액 수업료의 15%	정규학기 내	■교직원은 근무시간 외 개설된 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만 지 급함	
교직원 장학금B	모든과정	본 대학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는 교직 원 본인(정규직에 한함)	입학금 전액 수업료의 50%	정규학기 내	■교직원은 근무시간 외 개설된 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만 지 급함	
		본 대학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는 교직 원 (정규직에 한함)의 배우자 및 직계자 녀	입학금 전액 수업료의 30%	정규학기 내		
본교출신 장학금	모든과정	본 대학교의 학위소지자가 대학원 학위과정 에 진학한 경우	입학금 전액	입학 시		
돈보스코 장학금	모든과정	경제적 사정이 어려운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	수업료의 30%	정규학기 내		
외국인유학생 장학금	모든과정	외국인유학생	수업료의 30%	정규학기 내		
외국인면학 장학금	모든과정	외국인유학생 중 기숙사에 입관하는 자	기숙사관리 비의 50% 지원	정규학기 내	■식비 제외	
한국어능력 우수장학금	모든과정	외국인유학생 중 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	수업료의 20%	정규학기 내 1회에 한하여 지원		
대건장학금	모든과정	가톨릭 성직자·수도자 신분으로 입학한 자	수업료의 50%	정규학기 내		
플러스 장학금	석사	석사논문 대체학기 이수를 승인받은 자 에게 지급(일반대학원에 한함)	수업료의 30%	추가학기	■1개 추가학기 지급	
온라인 석사과정 입학장학금	석사	온라인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자	입학금 전액	입학 시		
연구장려 장학금	모든과정	SCI(E)급 국제학술지	1편당 500,000원	정규학기 내	■ 공동주저자일 경우 장학금을 1/n로 지 급함	
		SCOPUS급 학술지	1편당			

장학금 종류	대상	지급기준	지급금액	수혜기간	비고
			300,000원		
		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	1편당 100,000원		
통합과정 진입학장학금	통합과정	석・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으로 입학한 자	입학금 전액	입학 시	
학・연・산 협약기관 장학금	모든과정	본 대학교와 학·연·산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중인 자	입학금 전액	입학 시	
공무원 장학금	모든과정	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	수업료의 50%	정규학기 내	■ 공무원 및 군인연금 가입자
특별장학금	모든과정	별도의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일정금액	재학 중	
하상장학금	석사	출연자의 조건에 따라 지급	일정금액	정규학기 내	